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36
----------	-------

발의연월일 : 2026. 6. 23.

발 의 자 : 남인순 · 김선민 · 허종식  
박홍배 · 서영석 · 황운하  
박은정 · 전진숙 · 신장식  
강경숙 · 이주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국토교통부 고시로 심사평가원과 보험회사등이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하고 있음.

그런데 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따라 그 비용이 변동하여 심사평가원이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회사등이 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 등을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심사평가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2조의4 신설 등).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단서 중 “보험회사등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을 “제12조의2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보험회사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중 “위탁”을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하 “전문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심사기관”을 “심사평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따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 경우”를 “따른”으로 한다.

이 경우 진료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타당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진료수가기준을 개발할 수 있다.

제12조의3의 제목 중 “전문심사기관”을 “심사평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문심사기관은 전문심사기관의”  
를 “심사평가원은 심사평가원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  
단 및 제2항 중 “전문심사기관”을 각각 “심사평가원”으로 한다.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사평가원은 제12조의2제2  
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함에 있어 의학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  
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의5(수수료의 지급 등) ① 보험회사등은 제12조의2에 따른 업무  
위탁 수수료를 심사평가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및 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전문심사기관”을 “심사평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  
8항 중 “전문심사기관”을 “심사평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전문심사기관”을 “심사평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전문심  
사기관”을 “심사평가원”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전문심사기관”을 “심사평가원”으로 한다.

제22조의2 전단 및 후단 중 “전문심사기관”을 각각 “심사평가원”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확인·조정하여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전문심사기관의 조정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전문심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해당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생략)

<신설>

<신설>

-----  
-----.

-----심사평가원-----  
-----

1. ~ 3. (현행과 같음)

② 심사평가원-----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4(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사평가원은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함에 있어 의학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의5(수수료의 지급 등) ① 보험회사등은 제12조의2에 따



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전문심사기관은 의료기관, 보험회사등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요청 근거 및 사유, 자료 제공대상자, 대상기간, 자료 제공기한, 제공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⑩ 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전문심사기관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9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① . ② (생략)

③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를 통지받은 보

-----  
-----  
-----  
-----  
-----  
-----  
-----.

⑨ 심사평가원-----  
-----  
-----  
-----  
-----  
-----  
-----  
-----  
-----.

⑩ -----  
-----  
-----  
-----  
-----  
-----  
-----  
-----  
-----.

제19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사평가원-----  
-----

협회사등 및 의료기관은 제1항의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내용,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④ ~ ⑥ (생략)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심의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위하여 전문심사기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문심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  
-----  
-----심사평가원-----  
-----  
-----.  
-----심사평가원-----  
-----  
-----.